
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53조 관련)

위 반 행 위	근거법조문	과태료
1.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57조제1항제1호	100만원
2.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산지전용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57조제1항제1호	100만원
3. 법 제15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산지일시사용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57조제1항제1호	100만원
4. 법 제25조제1항 단서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57조제1항제1호	100만원
5. 법 제25조제2항 후단에 따른 토사채취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57조제1항제1호	100만원
6. 법 제30조제1항 후단에 따른 채석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57조제1항제1호	100만원
7. 법 제40조제1항 전단(제4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복구설계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. 이 경우 과태료 금액은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면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. 가.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나. 1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다. 1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라.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	법 제57조제1항제2호	50만원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
8. 제40조의2제2항(제4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시정통지의 내용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	법 제57조제1항제3호	100만원
9. 제44조의2제1항·제2항을 위반하여 업무보고 및 자료제출이나 현지조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	법 제57조제1항제4호	100만원